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501호

발의년월일 : 2020년 9월 8일
발 의 자 : 유영주 의원
찬 성 자 : 임정옥, 최재란, 박종호, 심광식, 서병완, 정택진 의원 (6명)

1. 제안이유

최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, 구청장의 안전 관련 시책 수립 및 안전물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가. 외국어인 ‘헬멧’을 ‘안전모’로 순화함(안 제3조제1항).

나.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자전거 안전물품 지급 규정을 신설함(안 제21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5조, 제21조,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추후 반영.

다. 관련부서 검토의견 : 없음.

라. 기타

1) 개정안 : 별　첨

2) 입법예고 : 2020. 9. . ~ 2020. 9. 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헬멧”을 “안전모”로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야광반사체·야간라이트 부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고,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에게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1. 자전거 안전교육
2.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캠페인
3.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민 등의 권리와 책무) ①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자전거 이용시 헬멧 착용의 의무 5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	**제3조(구민 등의 권리와 책무)**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자전거 이용시 **안전모** 착용의 의무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**제21조의3(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야광반사체·야간라이트 부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** **②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고,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에게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** **1. 자전거 안전교육** **2.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캠페인** **3.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**

[관계 법령]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**

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**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**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**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도로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③ **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**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
2. 연도별 활성화계획
3. **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**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읍·면 지역의 국도·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1조(자전거 타기 교육 등)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**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.**

제22조(자전거의 등록 등) ① **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**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**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)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.**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,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·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,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 명 지

번호	의원명	서 명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11		
12		
13		
14		
15		
16		
17		
18		